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목 차>

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요건 등
2.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3.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 취소 조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작 성 자	이름	권민재
	담당부서 (과)	방사선안전과		직급	서기관
	국장	박진희		연락처	02-397-7273
	과장	임종윤		이메일	kwonmj@mail.go.kr

2026. 08. 24.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박진희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요건 등								
	2.규제조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0조의 2 제70조의 3								
	3.위임법령	원자력안전법 제46조의 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과 위험성이 유사한 핵연료물질 사용 시 일정한 전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규정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종사자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는 현행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등을 준용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선임·운영 중								
	7.규제내용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고, 선임·변경·해임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핵연료물질사용자 : 2025년 기준 15개 기관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핵연료물질사용자</td><td>15개(2025년 기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핵연료물질사용자	15개(2025년 기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핵연료물질사용자	15개(2025년 기준)								
9.규제목표	종사자 중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종사자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해당						

			성격의 규제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0조의2(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소마다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② 법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 후 새로 선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1. 법 제4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핵연료물질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 2. 법 제4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기 전 3.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해임 후 선임하는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u>〈신 설〉</u>	제70조의3(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46조의2제7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핵연료

현 행	개 정 안
	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3호나 제7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이하 “방사선관리기술사”라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제73조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면허를 소지한 경우: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수료 2.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기술사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 ③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과 위험성이 유사한 핵연료물질사용의 경우 현재 종업원 중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 절차 및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 미비

※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자가 선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운영 중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방사선장해방지 조치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핵연료물질취급자 (15개 기관)	'26.7.13/서울 (대면 간담회) ※ 불참기관은 서면 의견수렴	안전관리자 수 확대 및 전담인력 확충 등	중장기 검토 필요

3. 규제목표

-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자가 종업원 중에서 일정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규정 및 기술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방사선장해방지조치, 핵연료물질사용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자격요건 및 세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선임, 변경, 해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자격 및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규제 목적과 수단이 타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은 핵연료물질 취급 지식 및 관리직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핵물질방호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법령에 규정

구분	근거조문
핵연료물질, 핵원료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	제57조의3(핵물질방호관리자) 사용자는 제56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경우, 특정 <u>핵연료물질 방호에 관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핵연료물질 취급 등에 관한 지식을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핵물질방호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u>
핵연료 물질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핵물질방호관리자의 요건) 법 제57조의3 제1항에 따라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바와 같다. 1. 사용시설 등을 설치한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특정 <u>핵연료 물질 방호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u> 2. 특정 핵연료 물질의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특정 핵연료물질방호 업무에 <u>관리직으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동등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경우</u>

○ 타법사례

- 국내 「전기안전법」, 「화재예방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은 해당 분야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분	근거조문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행정지도를 통해 방사선안전관리자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허가 인력기준*에 따른 유자격자 중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규제 기관에 알리고 있으므로 미준수 가능성은 낮음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2조(허가기준) 제2호에 따른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관련 면허 등 소지자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모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또는 소지 시설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어 준수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규제집행에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위탁업무 수행)에서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규제집행에 대한 재정적 문제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26.5.19.

* 주요내용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및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 지정 의무화, 사용 또는 소지 개시기간 등

-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등 제·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 : '26.6.25.

-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등 제·개정안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 '26.7.13.

2. 향후 평가계획

-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 핵연료물질 취급 관련 안전 사고 발생 여부 등 규제집행 현황 및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

3. 종합결론

- 핵연료물질사용자가 종사자 중 일정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방사선장해방지 조치 등 안전관리를 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타법사례 등을 참조할 때 합리적인 조치이며, 행정적·재정적 집행이 가능하여 종사자 및 공공의 안전 도모 가능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2.규제조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0조의 4								
	3.위임법령	원자력안전법 제46조의 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일정 수준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규정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방지 조치 등의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종사자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7.규제내용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을 연간 30일 이내(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안전관리자의 역할 대리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의 면허·자격 소지 또는 취급 경력 및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핵연료물질사용자 : 2025년 기준 15개 기관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핵연료물질사용자</td><td>15개(2025년 기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핵연료물질사용자	15개(2025년 기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핵연료물질사용자	15개(2025년 기준)								
9.규제목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 총괄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종사자 안전을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0조의4(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핵연료물질사용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즉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작성해 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6조의2제6항제1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2. 법 제46조의2제6항제2호의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법 제46조의2제7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 2.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 취급업무 종사경력 및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를 지정·운영하는 입법례를 참조하여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할 필요
- *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적절한 대리자 자격요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핵연료물질 취급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대리자로 지정되어 안전관리가 저해되거나 사고 발생 시 대응 미숙으로 방사선 피해가 확대될 우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안전관리 직무대행자가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방사선장해방지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력 및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핵연료물질취급자 (15개 기관)	'26.7.13/서울 (대면 간담회) ※ 불참기관은 서면 의견수렴	같은 기관 종업원 중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경력도 허용	중장기 검토 필요

3. 규제목표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핵연료물질사용자가 일정 수준의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여 안전관리규정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업에 대한 방사선장해방지조치, 핵연료물질사용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현행법상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 지정에 관한 자격요건 및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안전관리자 부재 시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최소한의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 목적과 수단이 타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핵연료물질 취급에 상당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를 안전관리 감독책임자로 두고, 필요시 해당 책임자의 대리자를 사전에 선임·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구분	근거조문
사용시설 등에 관한 보안규정의 심사기준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12 제1항 제3호 관련 주요 기준 - 핵연료물질의 취급에 관해 지도·조언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식 및 경험 등을 갖춘 자를 안전 감독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하고, 그 직무 및 책임 범위가 안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함 - 핵연료 물질의 사용 등을 수행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조직 규모, 한 공장 또는 사업장당 여러 개의 사용 시설 등이 존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충분한 보안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u>보안 감독 책임자의 대리자를 미리 선임하여 배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u>

○ 타법사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령은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구분	근거조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④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대리자</u>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

	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절차 및 업무,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⑤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삭제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안전관리자 일시적 부재 시 별도의 인허가 변경이나 신고 절차 없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도록 설계함으로써 행정 부담이 적어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모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또는 소지 시설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어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규제집행에 문제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위탁업무 수행)에서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규제집행에 대한 재정적 문제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26.5.19.

- * 주요내용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및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 지정 의무화, 사용 또는 소지 개시기간 등

○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등 제·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 : '26.6.25.

○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등 제·개정안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 '26.7.13.

2. 향후 평가계획

-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 핵연료물질 취급 관련 안전 사고 발생 여부 등 규제집행 현황 및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

3. 종합결론

- 위험성이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기관의 방사선안전 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을 참조하여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방사선장해방지 조치 등 원자력안전법상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타법사례 등을 참조할 때 합리적인 조치이며, 종사자 및 공공의 안전 도모에 기여
- 적절한 자격을 갖춘 대리자는 기존 종업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어 사업자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핵연료물질안전 관리자의 부재 시에도 안전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핵연료 물질 취급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핵연료물질 사용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 취소 조건								
	2.규제조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5조의 3								
	3.위임법령	원자력안전법 제48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6.09.18~2026.10.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허가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핵연료물질 사용 또는 소지를 하도록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기간을 1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7.규제내용	허가를 받은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 또는 소지하도록 의무 부과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 중단 제한 기간인 1년과 동일하게 설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핵연료물질사용자 : 2025년 기준 15개 기관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핵연료물질사용자</td><td>15개(2025년 기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핵연료물질사용자	15개(2025년 기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핵연료물질사용자	15개(2025년 기준)								
9.규제목표	핵연료물질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 또는 소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예측가능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5조의3(사용 또는 소지 개시기간) 법 제48조제1항제1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핵연료물질사용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상 다른 허가와 달리 허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용 또는 소지를 하도록 하는 규정 미비
- 법적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고 허가를 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비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핵연료물질 사용과 위험성이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과 관련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허가 받은 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핵연료물질취급자 (15개 기관)	'26.7.13/서울 (대면 간담회) ※ 불참기관은 서면 의견수렴	없음	-

3. 규제목표

-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경우 허가를 받은 후 언제까지 해당 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도록 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 ※ 원자력안전법 체계상 핵연료물질사용을 제외한 허가대상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핵연료물질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도록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므로 규제 목적과 수단이 타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타법사례

- 석유사업법, 전기사업법 등 허가사업과 관련된 국내법은 허가 후 설비 등을 설치하여 특정 기한 내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분	근거조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u>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u>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39조(사용 개시) <u>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u>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사용 또는 소지 필요성이 없는데 굳이 허가를 신청하여 안전성을 심사받을 실익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없으므로 미준수 가능성은 낮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모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또는 소지 시설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어 준수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규제집행에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위탁업무 수행)에서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규제집행에 대한 재정적 문제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26.5.19.

* 주요내용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및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 지정 의무화, 사용 또는 소지 개시기간 등

-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등 제·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 : '26.6.25.

-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등 제·개정안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 '26.7.13.

2. 향후 평가계획

-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 핵연료물질 취급 관련 안전 사고 발생 여부 등 규제집행 현황 및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

3. 종합결론

- 핵연료물질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도록 규정하도록 한 것은 타법사례 및 원자력안전법상 위험도가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자의 사업개시기간 입법례를 등을 참조할 때 합리적인 조치이며, 허가신청 등에 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